


|   |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|
|---|---|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|
|  | <h2 style="margin: 0;">타학과 수강에 관한 규칙</h2> |            | 규정번호 | 3-3-8      |
|   |   |            | 제정일자 | 2000.07.01 |
|   | 개정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15.09.01 |      |            |
|   | 개정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Ver .5     | 총페이지 | 2          |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학칙 제34조 및 학칙시행세칙 제30조에 의하여 학과 간의 타학과 수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타학과 수강 허용 범위)** ① 전문학사과정에서 타학과의 수강 허용 학점은 학기당 6학점 이내, 최대 18학점(3년제는 30학점) 이내에서 허용한다.

②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에서 타 학과의 수강 허용 학점은 학기당 3학점 이내, 최대 9학점 이내에서 허용한다.

③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허용범위를 초과하여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소속 학부(과)장의 허락을 득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규칙은 재수강신청 및 계절학기 수강신청을 포함한다.

**제3조(타학과 수강신청 방법)** ① 타학과 수강신청 및 수강신청 정정은 교학처에서 따로 공고하는 기간에 해야 한다.

② 인원 제한 강좌의 경우 해당 학과 수강신청 결과 수강 잔여 인원이 없을 때에는 해당 교과목에 대한 수강신청을 불허한다.

③ 각 학과별로 수강신청 이전에 타학과 수강 불허 강좌를 지정할 수 있다.

**제4조(타학과 수강 교과목의 학점인정)** 이 규칙에 의해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은 일반 선택과목으로 인정한다. 단, 소속 학과에서 전공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해당 학과의 전공과목으로 인정한다.

**제5조(규칙의 개정)** 이 규칙은 교무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의 허락을 받아 개정한다.

**부 칙**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